전자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

이 「전자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」(이하 "이 약관"이라 한다)은 ㈜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과 이용자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전자채권거래(이하 "거래서비스"라 한다)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.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, 이용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 1 조 (적용범위)

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채권 발행, 전자채권 보관 등 전자채권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.

제 2 조 (용어정의)

-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전자채권"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서 정하는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된 채권을 말한다.
 - 2. "이용자"라 함은 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.
 - 3. "구매기업"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전자채권을 발행하는 업체를 말한다.
 - 4. "판매기업"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구매기업에 의해 전자채권의 채권자로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.
 - 5. "전자적 장치"라 함은 컴퓨터 등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.
 - 6. "접근매체"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채권거래에 있어서 발행 및 담보대출 등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를 말한다.
 - 가.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
 - 나.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인증서(이하 "인증서)
 - 다.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또는 비밀번호
 - 라.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
 - 마. 은행이 교부하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(OTP)
 - 7. "발행은행"이라 함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자채권 발행신청을 받아 금융결제원에 전자채권 발행등록을 의뢰하고 전자채권 만기일에 지급결제를 대행하는 은행을 말한다.
 - 8. "보관은행"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전자채권 발행통지를 받아 판매기업에게 전자채권 발행통지를 하고 동 전자채권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한다.
 - 9. "금융결제원"이라 함은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의해 전자채권 원장발행, 등록, 지급제시, 대금지급, 자금결제, 미결제 및 거래정지 처분 등 전자채권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
 - 10. "보증전자채권"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채권에 대하여 발행은행이 지급보증을 한 전자채권을 말한다.
 - 11. "무보즁전자채권"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채권에 대하여 발행은행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전자채권을 말한다.
 - 12. "상환청구권이 있는(WITH RECOURSE) 전자채권"이라 함은 보관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전자채권을 양도받아 전자채권담보대출을 실행한 전자채권에 대하여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전자채권금액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보관은행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채권을 말한다.
 - 13. "상환청구권이 없는(WITHOUT RECOURSE) 전자채권"이라 함은 보관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전자채권을 양도받아 전자채권담보대출을 실행한 전자채권에 대하여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전자채권금액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관은행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자채권을 말한다.
 - 14. "미결제전자채권"이라 함은 전자채권 만기일에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채권금액이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을 말한다.
 - 15. "전자채권담보대출"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.

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및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 (거래서비스 이용신청 및 슝낙)

- ① 이용자가 은행과 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은행에 거래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한다.
- ②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서비스 이용신청을 받고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거래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할 수 있다.
- ③ 제 2 항의 승낙이 있는 경우, 이용자는 은행과 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약정 등을 체결하고 거래에 필요한 사업자등록번호, 계좌번호, 이메일 주소 등을 은행에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거래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)

- ① 이용자가 거래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은행에 해지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용자는 기존에 발행한 전자채권을 이 약관에 따라 모두 결제한 후에만 제 1 항에 따라 해지통지를 할수 있다.

제 5 조 (인증서 사용 및 관리)

- ① 이용자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의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「전자서명법」에 의한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 이용자는 인증서 등 거래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, 사용위임 또는 양도 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,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
제 6 조 (이용시간)

- ① 은행은 이용자의 이용시간을 은행의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한다.
-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 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,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. 다만, 시스템 장애복구,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 7 조 (수수료)

- ① 은행은 전자채권의 발행 및 보관에 관한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, 수수료율 적용은 개별약관에 따른다.
- ② 은행이 제 1 항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한다.

제 8 조 (전자채권의 발행 및 용도)

- ① 구매기업은 전자채권을 정상적인 상거래에 근거한 구매대금 결제용도로만 발행할 수 있으며, 만기를 90 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2020.5.29.까지는 150 일 이내, 2021.5.29.까지는 120 일 이내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.
- ② 구매기업이 전자채권을 발행할 경우 상환청구권이 있는 전자채권과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채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한다.
- ③ 제 2 항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채권은 보증전자채권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.
- ④ 구매기업은 발행하는 전자채권이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전자채권의 만기일을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, 만약 60 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한다.
- ⑤ 구매기업은 발행하는 전자채권이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전자채권의 만기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, 만약 60 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한다.

제 9 조 (전자채권의 발행절차)

전자채권의 발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구매기업은 발행은행과 전자채권발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.
- 2. 구매기업은 은행이 정한 이용가능시간 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채권 발행을 신청하여야 한다

- 3. 발행은행은 구매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전자채권 종류(보증.무보증)와 전자채권번호, 발행한도 및 발행금액 등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서 규정한 전자채권내역을 금융결제원에 전송하여 전자채권 발행등록을 의뢰한다.
- 4. 금융결제원은 등록을 의뢰받은 전자채권내역을 원장으로 만들어 보관한 후 발행은행과 보관은행에게 등록결과를 통지한다.
- 5. 보관은행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채권발행내역을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판매기업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 10조(전자채권 양도)

- ① 판매기업은 전자채권담보대출을 위하여 전자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.
- ②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라 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「민법」 제 450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 - 1. 판매기업(양도인)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구매기업(양수인)의 승낙이 「전자서명법」 제 2 조의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
 - 2. 제 1 호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채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등록될 것
- ③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「전자서명법」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, 제 2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「민법」 제 4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- ④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기업은 「민법」 제 450 조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전자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- ⑤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이 전자채권담보대출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결제방법)

- ① 발행은행은 만기도래된 전자채권 내역을 구매기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② 구매기업은 만기도래된 전자채권 해당금액을 만기일 은행 영업마감시각 전까지 입금하여야 한다.
- ③ 발행은행은 제 2 항의 입금금액을 구매기업 결제계좌에서 예금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하도록 보관은행에 통지한다.
- ④ 같은날 만기도래된 전자채권이 여러 건인 경우 전자채권의 결제순서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 12 조 (미결제전자채권 및 제재)

- ① 제 11 조 제 2 항에서 정한 은행 영업마감시각까지 구매기업이 만기도래된 전자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행은행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보관은행에 미결제 통보한다.
- ② 제 1 항의 미결제전자채권 발행인인 구매기업에 대한 제재는 금융결제원 「B2B 업무규약」 및 동「시행세칙」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 13 조 (사고신고)

- ① 구매기업은 계약불이행, 피사취, 합의불가 등 금융결제원 「B2B 업무규약」및 「시행세칙」에서 정하는 전자채권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자채권 만기일에 전자채권 대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발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② 제 1 항의 사고신고방법 및 절차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.

제 14조 (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)

- ① 이용자는 거래서비스에 필요한 명칭, 대표자, 주소, 이메일주소 등과 인감, 서명을 은행에 미리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이용자는 거래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 2 항에 의한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 3 항에 의한 신고를 접수하고 그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.

제 15 조(거래내용의 확인)

- ① 은행은 전자채권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(전자문서를 제외한다)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- ③ 이유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 16 조(취소 및 오류의 정정)

- ① 이용자는 금융결제원「B2B 업무규약」및 동「시행세칙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 전자채권 거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이용자는 전자채권 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 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③ 은행은 스스로 전자채권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.

제 17조 (손실부담 및 면책)

- ① 은행은 구매기업이 등록한 전자채권 발행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며 구매기업이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자채권을 발행함으로 인해 발생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② 은행은 기업간에 물품의 배송, 운송, 하자, 반품 등 매매계약 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.
- ③ 은행은 이용자가 은행에 제출한 주소(이메일 주소 포함)의 오류기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아니한다.

제 18조 (통지의 효력)

- ① 은행이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. 그러나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 입력된 때를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② 이용자가 제 14 조 제 3 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제 1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③ 은행이 이용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 19조 (거래서비스 이용의 제한)

- ① 은행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- 1.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인증서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
 - 2.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된 때
- ② 은행은 제 1 항에 의해 거래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.
- ③ 은행은 이용자가 인증서 재발급, 유효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거래서비스 재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 20 조 (약관 변경)

이 약관의 변경은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한다.

제 21 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

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「전자금융거래법」,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, 「전자서명법」,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동 법 「시행령」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및 동 법 「시행령」, 금융결제원 「B2B 규약」 및 동 「시행세칙」,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 및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을 적용한다.

제 22 조 (준거법)

- 이 약관의 해석.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.
- 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